

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2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11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연장 요구됨
-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추진 활성화를 위해 각종 체육대회 및 전지 훈련팀 유치사업에 기금사업 활용관련 근거마련

2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조성기간 삭제 및 존속기한 연장(제12조, 제13조)
- 나. 기금의 사용범위 확대(제15조)
- 다. 기금 사용 제한사항 설정 변경(제15조 제3항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제142조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4조
- 나. 예산조치 : 평창군체육진흥기금 및 이자수입금 사용범위 활용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
 - 1) 입법예고 : '18. 7. 18 ~ '18. 8. 6(20일간)실시, 의견사항 없음
 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의견 있음(미반영)

- 제4조(구성) 위원회의 성별 균형 관련

5) 조례·규칙심의회 : 원안의결

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야외활동”을 “야외 운동”으로, “신체적 활동”을 “신체 활동”, “배양하고”를 “기르고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「국민체육 진흥법」”을 “「국민체육진흥법」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2제1항 중 “전문 체육진흥”을 “전문체육 진흥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0월 16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.

제13조의2제1항 중 “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”를 “협의회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.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, 대한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협회 및 연맹 등에 대한 지원사업 등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된 사업

제15조제2항 중 “이자 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제1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기금 사업비는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

수 없으며 조성목표액의 100분의 80은 보존하여야 한다.

제18조 중 “「평창군재무회계규칙」”을 “「평창군 재무회계 규칙」”으로
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체육”이란 <u>운동경기·야외 활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</u>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<u>배양하고</u>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2·5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야외 운동</u> ----- <u>신체 활동</u>----- ----- <u>기르고</u> ----- -----.</p> <p>2·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설치) 「<u>국민체육진흥법</u>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평창군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심의를 위하여</u>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 소속하에 <u>평창군체육진흥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</u>를 둔다.</p>	<p>제3조(설치) 「<u>국민체육진흥법</u>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0조의2(전문체육의 지원) ① 군수는 <u>전문체육진흥을 위하여</u>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0조의2(전문체육의 지원) ① ----- ----- <u>전문체육진흥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기금의 조성) ① (생략)</p> <p>② <u>기금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조성한다.</u></p>	<p>제12조(기금의 조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

제13조(기금의 관리) ①·② (생략)

<신 설>

제13조의2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) ①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 체육진흥 협의회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업무를 대행한다.

② (생략)

제15조(기금의 사용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한다.

1. ~ 5. (생략)

<신 설>

6. (생략)

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고 이자 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비로

제13조(기금의 관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0월 16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.

제13조의2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) ① -----
- 협의회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기금의 사용) ① 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전지 훈련 유치, 대한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협회 및 연맹 등에 대한 지원사업 등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된 사업

7. (현행 제6호와 같음)

② -----
-- 제1항-----

사용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18조(관계규정의 준용) 기금의
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「평창
군재무회계규칙」을 준용한다.

-----.

③ 기금 사업비는 해당 연도 기
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
여 집행할 수 없으며 조성목표
액의 100분의 80은 보존하여야
한다.

제18조(관계규정의 준용) -----
----- 「평창
군 재무회계 규칙」-----.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(제3조제1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제15조(기금의 사용) 제3항 '기금사업비는 해당 연도 기금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조성목표액의 100분의 80은 보존하여야 한다' ※조성목표액 : 50억원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: 비용 추계를 위하여 2019년도 사업비는 현재기준 확정된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추계 결과

○ 예산소요액 : 50,000천원(2019년)

구 분	대상자수(명)	소요금액(천원)	비 고
합 계		50,000	
평창군 체육인의밤 행사 (평창군 체육분야 유공자시상)	200	50,000	연례 추진 행사

다. 재원조달 방안

: 평창군체육진흥기금 및 이자수입금

3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교육체육과장 권혁수
연락처	(033) 330 - 2020

< 연도별 비용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9년)	2차년도 (2020년)	3차년도 (2021년)	4차년도 (2022년)	5차년도 (2023년)	계
세 입							
세 출							
평창군 체육인의밤 행사개최		5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	250,000
재원 조달	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					
	지방세						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5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	250,000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민간자본							
해외자본							
기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210mm×297mm [일반용지 60g/m² (재활용품)]